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경 의원 외 14명

나. 의안번호 : 제100호

다. 제출일자: 2022. 8. 26.

라. 회부일자 : 2022. 9. 2.

2. 제안사유

○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 다로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 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 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이

노력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: 2022. 9. 7. ~ 2022. 9. 11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)

○ 제출의견 : 원안 가결

- 제2항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 지 설치 노력을 강조하여 어린이 보고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 해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보다 적극 설치하게 됨 으로써
-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확보를 보다 강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¹⁾ 보행자전거과-903호(2022.9.7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○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녹색횡단 신호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²)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³)에서는 "특별·광역시장은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한 보행을 위해 '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'를 설치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음

²⁾ 보행신호에 따른 음향신호 표출내용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, 경찰청, '17.3.)

보행신호	상 황	음향신호		
① 적색	무단횡단 감지 시	「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」		
② 녹색	횡단 감지 시	「좌우를 살 핀 후 건너가십시오」		
③ 녹색 점멸	횡단 감지시	「다음 신호에 건너세요」		

³⁾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

바.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 2).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

○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 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 제7조의34)이 '19년 1월 3일 개정5)되었고

조례 개정 당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,730개소 중 32개6) 의 횡단보도에만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가 설치되어 있으며, 현재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,711개소 중 667개7) 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가 다수인 상황임

○ 또한,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8)을 살펴보면 2021년 사고건수는 68건으로 매년 등락

⁷⁾ 서울시 보행자전거과는 1,7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중 667개 지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('22년 9월)

0)	치그 대기	러으리	심리하ゖ충그ㅇ	념내 어린이(12세	이 원기	교토사고	처하
8)	최근 3번째	끼풀시	어딘이보오구~	크대 어딘이(1/세	9101	ルタペル ルタペール	억왕

	보호	사고	사망자	부상자	사고유형(건수)				
연도	포포 구역	건수	^1 3 ^1 수	- F 6 시 - 수		**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길가장	보도	
	(개소)	(건)	(명)	(명)	횡단중	통행중	자리 구역	통행중	기타
2017	1,733	81	1	85	45	3	1	1	31
2018	1,730	77	1	77	43	7	2	4	21
2019	1,721	114	2	115	53	8	2	2	49
2020	1,694	65	_	70	19	1	2	1	42
2021	1,735	68	1	83	26	5	_	2	35

[※]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(http://taas.koroad.or.kr/)

⁴⁾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

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 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⁵⁾ 서울특별시조례 제6976호, 2019. 1. 3., 일부개정·시행

⁶⁾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(의안번호 143호, '18.9.19. 발의): 어린이보호구역내 32개 지점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

을 거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횡단중 사고 비율은 38.2%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임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 구역내 횡단보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 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다만,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"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"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합리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